

서울특별시 마포구 헌혈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영미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2-105
----------	-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2. 9.

발 의 자 : 김영미, 강동오, 김승수
남해석, 차해영, 한선미

1. 제안이유

헌혈사업 민관협력 증진 및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헌혈추진
협의회 구성 및 운영 규정을 신설하고, 헌혈자에 대한 지원사업을
시행하여 헌혈 참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인용 조문의 정비(안 제1조, 안 제2조)
- 나. 헌혈추진협의회 구성(안 제7조~제9조)
 - 헌혈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 규정 신설
- 다. 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(안 제10조)
 - 헌혈자에 대한 지원근거 규정을 구체적으로 신설

3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
4. 참고사항

가. 입법예고 : 2022. 9. 15. ~ 9. 19.(의견없음)

나. 개정조례안 : 붙임

다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

서울특별시 마포구 헌혈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헌혈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조례는 「혈액관리법 시행령」 제2조제2항”을 “조례는 「혈액관리법」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”으로 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「혈액관리법」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”을 “「혈액관리법」 제4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”으로 한다.

제7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로 하고,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조(헌혈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) ① 구청장은 「혈액관리법」 제4조의6에 따라 구민과 관내 관련 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헌혈추진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를 구성할 수 있다.

②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협의회의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.

③ 당연직 위원은 헌혈관련 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,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. 이 경우, 위촉직 위원은

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
1. 교육기관, 경찰서, 군부대, 보건·의료기관, 민간단체, 적십자 혈액원 등 관련 기관·단체의 장

2.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

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헌혈관련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.

⑤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,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⑥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⑦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운영에 관한 사항과 위원의 해촉, 제척·기피·회피, 수당 등에 필요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준용한다.

제8조(협의회의 기능)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.

1. 지역사회 중심의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 방안

2.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헌혈권장 및 장려 방안

3. 혈액수급 부족 및 위기관리 대응에 관한 사항

4. 헌혈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

5. 헌혈 관련 정보 제공 및 홍보

6. 제4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추진에 관한 사항

제9조(위원의 임기) ①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② 당연직 위원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

제10조(헌혈 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) 구청장은 헌혈장려를 위하여 구민이 마포구 관내에서 헌혈을 한 경우 온누리상품권 또는 마포사랑상품권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<u>혈액관리법 시행령</u>」 제2조제2항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자발적인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 조례는 「<u>혈액관리법</u>」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“헌혈권장활동”이란 「<u>혈액관리법</u>」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건강한 서울특별시 마포구민(이하 “구민”이라 한다)에게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.</p> <p>2. 3.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「<u>혈액관리법</u>」 제4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--- ----- -----.</p> <p>2.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7조(<u>헌혈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</u>) ① <u>구청장은 「혈액관리법」 제4조의6에 따라 구민과 관내 관련 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헌혈추진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를 구성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 <u>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</u></p>

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협의회의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부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.

③ 당연직 위원은 헌혈관련 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,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. 이 경우,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
1. 교육기관, 경찰서, 군부대, 보건·의료기관, 민간단체, 적십자 혈액원 등 관련 기관·단체의 장

2.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

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헌혈관련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.

⑤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,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.

<신 설>

<신 설>

⑥ 협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⑦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운영에 관한 사항과 위원의 해촉, 제척·기피·회피, 수당 등에 필요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준용한다.

제8조(협회의 기능)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.

1. 지역사회 중심의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 방안
2.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헌혈권장 및 장려 방안
3. 혈액수급 부족 및 위기관리 대응에 관한 사항
4. 헌혈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
5. 헌혈 관련 정보 제공 및 홍보
6. 제4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추진에 관한 사항

제9조(위원의 임기)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

<신 설>

제7조 ~ 제9조 (생 략)

임할 수 있다.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

제10조(헌혈 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) 구청장은 헌혈장려를 위하여 구민이 마포구 관내에서 헌혈을 한 경우 온누리상품권 또는 마포사랑상품권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.

제11조 ~ 제13조 (현행 제7조부터 제9조까지와 같음)

[관 계 법 령]

□ 「혈액관리법」

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를 조성하고 건강한 국민의 헌혈을 장려할 수 있도록 대 국민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지원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제4조의3(헌혈 권장 등) ① 매년 6월 14일을 헌혈자의 날로 하고, 보건복지부장관은 헌혈자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실시하는 등 건강한 국민에게 헌혈을 권장할 수 있다. <개정 2021. 12. 21.>

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혈액원에 혈액관리업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
③ 헌혈 권장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4조의6(헌혈추진협의회 구성) ①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주민·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헌혈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 또는 시·군·구의 조례로 정한다.

□ 「**혈액관리법 시행령**」

제2조의3(헌혈의 권장)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조의3제3항에 따라 혈액의 수급조절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매년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을 수립·시행해야 한다.

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은 제1항에 따른 헌혈권장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, 대한적십자사 회장은 혈액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공공단체·민간단체 또는 혈액원에 대하여 헌혈권장 등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.

③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권장을 위하여 헌혈의 날 또는 헌혈사상 고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.

④보건복지부장관은 헌혈에 관하여 특히 공로가 있는 자에게 훈장 또는 포장을 수여할 것을 상신하거나 표창을 행할 수 있다.

서울특별시 마포구 헌혈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- 제6조(헌혈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) ⑦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운영에 관한 사항과 위원의 해촉, 제척·기피·회피, 수당 등에 필요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준용한다.
- 제9조(헌혈 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) 구청장은 헌혈장려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, 마포구 관내에서 헌혈을 한 사람에게 온누리상품권 또는 지역화폐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.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

3. 미첨부 사유

- 제6조: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,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3억원 미만인 경우
- 제9조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4. 작성자

작성자 이름	보건소 의약과 전지현
연 락 처	02-3153-9123